

VII.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시

☎ 연구계획서 작성 시 문의처 : 880-6513,6522(자연대 연구행정)/ 880-5492~3(기초과학연구원)

점검항목		점검 세부 내역	비고
일반사항 검토	지원내용	· 지원사업 지원분야가 공모 분야와 일치 여부 확인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의 신분과 직급이 신청자격에 부합 여부 확인 · 연구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 등 제한사항 저촉 여부 확인 · 연구참여자가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자 여부 확인 (NTIS에서 재확인) · 연구기관의 지원계획 확인	
예산서 작성 시 검토	예산서 작성	· 총괄표와 세부명세서의 비목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내부인건비	· 서울대학교 직급별 월 급여기준표 적용 · 지원 기관별 연구책임자 최소 참여율 적용 여부 확인 · 참여율 100% 초과 여부 확인	
	외부인건비	· 지급 대상에 따른 내.외부 인건비 계상의 적정성 확인 및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단가 적용 여부(참여율 100%초과 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서울대 직급별 월 기준액 적용)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원 인건비 man-month로 계상 ·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 감액 시 지원기관 승인 사항	학생인건비 대상과제 및 대상연구원 해당
	연구장비재료비	· 계획성 있는 장비, 재료의 목록 기재 · 1억원 이상 소요 장비 구입 시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 · 범용성 기자재(컴퓨터, 프린터 등) 구입 예정 시 계획서에 기재 · 소프트웨어 구입 예정 시 계획서 기재	※범용성기자재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등) 구입 예상시 당초계획서상 계상함. (계획변경불가)
	연구활동비	· <u>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등 비용 계상</u> (연구장비재료비 X, 연구활동비O) · <u>논문게재료, 폐수처리비</u> , 제세공과금, 수수료 계상 (미계상 시 직접비에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연구환경유지비 물품 상세히 기재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식대, 회의비로 사용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및 유지비용 계상 (에어컨 수리, 책상 및 의자 등 비품,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 구입)	
	연구수당	· 인건비(내.외부.학생인건비(미지급.지급) 포함) 의 20% 이내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 지원기관별 위탁연구비 계상기준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 직접비 40% 이내)	
	간접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율에 의한 간접비 계상기준 확인 · (간접비>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	서울대 간접비 고시율 28.9%
	참여기업 부담금	· 참여기업 있는 과제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비율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서울대 참여기업부담금(현금) 지원 불가(2010.7월 이후 협약부터)	
	기타	· 그 외 정부 및 지원기관 등 지침에 따라 각 비목별 연구비 편성액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2015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계획서(협약용)

								양식A101
① 부처사업명(대)	기초연구사업			보안등급(보안, 일반)			일반	
② 사 업 명(중)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공개	
③ 세부사업명(소)	핵심연구(개인연구)							
④ 과제성격(기초, 응용, 개발)	기초		④-1 실용화 대상여부(실용화, 비실용화)					
⑤ 과 제 명	국 문	연구과제 국문명 기재 (자연과학 발전을 위한~)						
	영 문	연구과제 영문명 기재						
⑥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⑦ 협동연구기관								
⑧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서울대학교		직급(직위)	교수			
	소속부서	○○ 학부		전공	○○○○전공			
⑨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M·Y)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00000000			0			200,000,000	
2차년도	200000000			0			200,000,000	
3차년도	200000000			0			200,000,000	
4차년도				0			0	
5차년도				0			0	
합계	600,000,000	0	0	0	0	0	600,000,000	0
⑩ 총연구기간		2015.05.01. ~ 2018.04.30.(36개월)						
⑪ 다년도협약연구기간		2015.05.01. ~ 2018.04.30.(36개월)						
⑫ 당해연도연구기간		2015.05.01 ~ 2016.04.30 (12개월)						
⑬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0
⑭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홍 길 동(인)

주관연구기관장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직인)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장 관 귀 하

< 연구비총괄표 >

(단위 : 천원)

									양식A611	
비 목	세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5	2016	2017			
직 접 비	인건 비	내부 인건 비	미지급		30,600	30,600	30,600			91,800
			지급	현금						0
				현물						0
		외부 인건 비	미지급							0
			지급	현금	18,900	18,900	18,900			56,700
				현물						0
	학생인건비				41,910	41,910	41,910			125,730
	인건비소계				60,810	60,810	60,810	0	0	182,430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96,058	96,058	96,058			288,174
			현물							0
	연구활동비				19,100	19,100	19,100			57,300
	연구과제추진비				5,750	5,750	5,750			17,250
	연구수당				18,282	18,282	18,282			54,846
	연구비소계				139,190	139,190	139,190	0	0	417,570
	위탁연구개발비									0
간접비									0	
연구비 총액				200,000	200,000	200,000	0	0	600,000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지급·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함

※ 연구비는 천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하고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며, 현물은 작성하지 않음

※ 신청서 (A101양식)의 출연금 합계와 본 양식 (A611)의 연도별 연구비 총액을 반드시 일치하여 기재함 (합계 불일치 시 에러 발생)

※ 신청 총 연구기간(표지 ⑩번)만큼 표지 ⑨번과 양식A611의 연차년도를 작성하여야 함.

(예를 들어 연구기간 3년을 신청한 경우, 표지 ⑨번과 양식A611에도 3차년도까지의 연구비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비총괄표>의 1차년도 비목별 금액과 <연구개발비목별 소요명세(1차년도)>의 비목별 금액은 일치되게 작성(비목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러 발생)

< 연구개발비목별 소요명세 (1차년도) >

(1) 직접비	200,000,000 천원
---------	----------------

(가) 인건비 ※ 계상식(인건비=월 인건비 지급액 × 참여율(%)×참여개월 수)

2014년 서울대학교 인건비 기준금액(참여율 100%)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책임급	선임급
월지급액(천원)	8,500	7,100	6,300	6,450	5,250
구분	원급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월지급액(천원)	4,000	3,500	2,500	1,800	1,000

(가)-1 내부인건비 ※참고사항: 소속기관“서울대” 기준금액 확인

(단위 : 천원)

							양식A401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 책임	홍길동	서울대학교	책임급	교수	2015.05.01	2016.04.30	미지급
	“NTIS 기입된 8자리 개인번호”	○○학부	대한민국	8,500	30 %	12	30,600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소속 연구책임자는 상기 A401양식에는 지급용 참여율만 기재(단, 미지급 참여율은 연구수당 계상시에 제외되며, A611양식에도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지 않음)
- ※ 자격,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 기재하지 않음
- ※ 소속기관 입력시 특정연구기관(KAIST, GIST, DGIST)인 경우 반드시 한글명칭(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입력
- ※ 직급 (연구소 해당)은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 :
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등
- ※ 직위(대학 해당)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함(시간강사, 전임강사, 연구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석좌교수 등)
- ※ 월급여 :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재함
- ※ 참여율
 -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 지급구분 : 동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으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기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소속 연구자의 경우,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없음
 - 단,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계상이 가능하나,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
- ※ 총액의 경우, 자동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기재(천원 단위에서 절사, A611 내부인건비 금액과 미일치시 에러 발생)
 - * 총액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가)-2 외부인건비(지급만 기재) ※참고사항 : 소속기관 “서울대” 기준금액 확인

(단위 : 천원)

		양식A612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5,250	0.36	1,890	
	석사급			0	
	학사급			0	
	학사이하			0	
합 계			0.36	1,890	

- ※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인력만 기재(연구책임자는 기재하지 않음), 동료교수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개인 단위 과제)
 ※ 상기 양식의 외부인건비는 지급인력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지급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A611(총괄표)에 해당 금액만 기재
 ※ 총액의 경우, 자동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기재(천원 단위에서 절사, A611 외부인건비(지급) 금액과 미일치시 업로드 에러 발생)

(가)-3 외부인건비 상세내역(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지급·미지급 기재)

(단위 : 천원)

양식A614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코드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취득학교 코드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지급구분
참여연구	김○○	서울대학교	114800	선임급	선임연구원	2015.05.01	2016.04.30	2012	서울대학교	114800
	“NTIS 기입된 8자리 개인번호”	○○학부	대한민국	12	5,250	30 %	18,900	박사	○○○○전공	지급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참여연구							0			

- ※ 직급 (연구소 해당)은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함 : 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 등
 ※ 직위(대학 해당)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함(시간강사, 전임강사, 연구교수, 조교수, 부교수, 교수, 기금교수 등)
 ※ 학위 : 전문학사과정, 전문학사,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박사후연수, 기타
 ※ 국적 :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코드검색에서 코드로 검색하여 기재하되 대한민국(한국) 이외의 국가만 검색하여 기재
 ※ 지급구분 (택1) : 미지급, 지급

(나)-1 학생인건비 ※참고사항 : 소속기관 “서울대” 기준금액 확인

(단위 : 천원)

양식A613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3,500	5.7	19,950	
박사과정	2,500	4.992	12,480	
석사과정	1,800	3.6	6,480	
학사과정	1,000	3	3,000	
합 계		17.292	41,910	

※ 총액의 경우, 자동계산되지 않으므로 직접 기재(천원 단위에서 절사, A611 학생인건비 금액과 미일치시 업로드 에러 발생)

(나)-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양식A615										
자 격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코드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학위 취득년도	최종학위 학교명	취득학교 코드
	생년월일	소속부서명	국적	참여 개월수	월급여	참여율 (%)	총액	학위	최종학위 전공명	지급구분
참여 연구	김○○	서울대학교	114800	박사후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2015.05.01	2016.04.30	2012	서울대학교	114800
	“NTIS 기입된 8자리 개인번호”	○○학부	대한민국	12	3,500	47.5 %	19,950	박사	○○○○전공	지급
참여 연구	김○○	서울대학교	114800	박사급	박사과정	2015.05.01	2016.04.30	2012	서울대학교	114800
	“NTIS 기입된 8자리 개인번호”	○○학부	대한민국	12	2,500	41.6 %	12,480	박사	○○○○전공	지급
참여 연구	김○○	서울대학교	114800	석사급	석사과정	2015.05.01	2016.04.30	2012	서울대학교	114800
	“NTIS 기입된 8자리 개인번호”	○○학부	대한민국	12	1,800	30 %	6,480	박사	○○○○전공	지급
참여 연구	김○○	서울대학교	114800	학사급	학사과정	2015.05.01	2016.04.30	2012	서울대학교	114800
						%	0			
참여 연구						%	0			
						%	0			
참여 연구						%	0			
						%	0			
참여 연구						%	0			
						%	0			
참여 연구						%	0			
						%	0			

※ 박사급(Post-Doc 포함) 급여는 기관 내부 급여 규정에 준하여 계상

(다) 연구장비·재료비

※참고사항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시 계상 필수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50,000,000	400 NMR	당초 계획서상에 삼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시 추가 양식 작성 “연구장비도입계획서” (1)연구시설장비개요 (2)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20,000,000	CCD 카메라	
	5,000,000	컴퓨터(본체, 모니터) 및 외장하드	
	3,000,000	실험용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3,000,000	공정처리비 및 단순 기기사용료등 (슈퍼컴퓨터등)	
	1,000,000	차량임차료(렌트비)	장비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임차료
시약 및 재료비	3,000,000	gold	고가의 소모성재료 상세히 기재
	2,000,000	mouse, 사료 등	
	7,058,000	Acetone, Silicagel, CO2, Ethanol 외 각종 시약	
	1,000,000	초자기기류	
	1,000,000	각종시약 및 소모성재료 구입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96,058,000		

※ 연구장비·재료비 작성(예시)

○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간단히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세부내역 작성 가능

- [예시1] 양식에 준하여 작성

구분	금액(원)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30,000,000	A, B, C 외 ○종	
시약 및 재료비	10,000,000	A, B, C 외 ○종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40,000,000		

- [예시2] 세부내역 작성

구분	금액(원)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5,000,000	A	000한 이유로 해당 연구활동에 필요
	3,000,000	B	
		...	
시약 및 재료비	500,000	시약 A	
	1,000,000	시약 B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9,500,000		

(라) 연구활동비 ※참고사항 : 제세공과금, 수수료 관련 계상 필수

구 분		산 정 기 준(원)	금액(천원)	비 고
여 비	국 외	책임급:1인×2,000,000×1회=2,000,000 원급:1인×2,000,000×1회=2,000,000 학,석,박사급:2인×1,500,000×1회=3,000,000	7,000,000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학회 포스터 인쇄, 논문 및 자료 복사 및 제본, 슬라이드 제작 등	500,000	
공공요금		우편료, 전화 및 팩스요금, 택배료 등	300,000	
제세공과금, 수수료		논문게재료(커버, 논문 액세스, reprint 등), 폐수처리문담금,관부가세	1,000,000	당초 계획서상에 사전계상 필수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300,000원×2인×1회=600,000	600,000	
	국외전문가	자문료 : 500,000원×1인×1회=500,000 항공료 : 3,000,000원×1인×1회=3,000,000 체재비 : 1,000,000원×1인×1회=1,000,000	4,500,000	
교육훈련	국 내	기기사용 교육비 원급:100,000×2인×1회=200,000	200,000	"방사선 교육비" 계상 불가
	국 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국내외 학술지 구독료 및 관련 서적	500,000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연구실 세미나 개최비 및 회의장 사용료(1회)	500,000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1,000,000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논문 영어 번역 및 교정료	500,000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기기분석료(TEM, FE-SEM, NMR, XPS, XRD, 시해분해형광측정 등)	2,000,000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총괄 및 세부연구책임자간 회의비 (●세부과제가 있는 총괄연구책임자만 계상 가능)	500,000	단독(단위)과제 계상 불가
합계			19,100,000	

※ 연구활동비 합계가 A611의 연구활동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마) 연구과제추진비 ※참고사항: 연구환경유지비 세부내역 정확히 계상

구 분		산 정 기 준(원)	금액(천원)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책임급:1인×500,000×4회=2,000,000 원급:1인×300,000×2회=600,000 학,석,박사급:2인×300,000×2회=600,000 (차량 렌트비포함)	3,200,000	차량 렌트비는 (화물운반 목적) 당초 계획서상에 사전계상 필수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토너, 잉크, A4용지, 기타사무용품	500,000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냉난방기 구입 및 수리비, 책상 및 의자, 가습기, 제습기, 청소기, 캐비닛 등	1,000,000	당초 계획서상에 사전계상 필수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100,000원×10회=1,000,000	1,000,000	
식대		주말 및 야근 식대 10,000×5회=50,000	50,000	
합계			5,750,000	

※ 연구과제추진비 합계가 A611의 연구과제 추진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바) 연구수당 ※참고사항 : 내부,외부,학생인건비(미지급+지급)의 20% 이내 계상

(단위 : 천원)

			양식A616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91,410)×(20)%=(18,282)원	18,282	내부,외부,학생인건비 (미 지급 및 지급)의 20% 이내 계상
합계		18,282	

※ 연구수당 합계가 A611의 연구수당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미일치시 업로드 에러 발생)

(사) 위탁연구개발비 : 기재하지 않음

※참고사항 : 수행기관 “서울대” 간접비 고시기준 금액 및 지원기관 계상기준 확인

(2) 간접비		천원
---------	--	----

※ 간접비는 연구관리부서(산학협력단)에 별도 안내하였사오니, 연구책임자께서는 반드시 확인 후 기재 요망

※ 동 신청서 양식에서는 기재하지 않음

[별첨1] 연구개발과제 참여 학생연구원 현황

연구개발과제 참여 학생연구원 현황

					양식A910
성명	학과(전공)	학위과정 ¹⁾	연락처		학생인건비 실지금액 하한선 적용 예외 여부 ²⁾
			휴대전화	이메일	
김○○	○○학과(○○전공)	선임연구원	010-0000-0000	***@snu.ac.kr	
김○○	○○학과(○○전공)	박사후연구원	010-0000-0000	***@snu.ac.kr	
김○○	○○학과(○○전공)	박사과정	010-0000-0000	***@snu.ac.kr	
김○○	○○학과(○○전공)	석사과정	010-0000-0000	***@snu.ac.kr	[별첨3]연구책임자 요청서 작성
김○○	○○학과(○○전공)	학사과정	010-0000-0000	***@snu.ac.kr	[별첨2]학생 요청서 작성

1) 연구개발과제 협약일 기준,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 택일

2) ‘학생 요청’, ‘연구책임자 요청’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
학생 요청 시 [별첨2] 양식,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3] 양식을 첨부

[별첨2] 학생인건비 실지금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참여학생용)

☐ 과제명 : 자연과학 발전을 위한~

☐ 학생연구원 성명 : 김○○

☐ 예외요청 사유

(※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본인은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학생인건비 실지금액 하한선 적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적용 예외를 요청합니다.

참여연구원 년 월 일
 김○○ (인)

[별첨3] 학생인건비 실지금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연구책임자용)

☐ 과제명 : 자연과학 발전을~

☐ 연구책임자명 : 홍길동 교수

☐ 예외요청 사유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 예외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

※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에 따른 예외 인정을 위한 최소기준:

$$\frac{\text{(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text{(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leq 30\text{백만원}$$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 (※ 학생인건비 지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

※ (작성예시)

- 0000년 :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0000년 이후 :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지급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학생인건비 실지금액 하한선 적용 시 연구개발과제 적정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적용 예외를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홍길동 교수 (인)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직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신한카드에 관련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5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개인연구) 신청년도 2015년
연구과제명 자연과학 발전을 위한~

☐ 참여인력 참고사항: "계획서상 참여연구원 전원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계획서파일과 함께 업로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대학	서 명
연구책임자	홍길동	00.00.00	서울대학교	자필서명
참여연구원	김○○	00.00.00	서울대학교	자필서명
참여연구원	김○○	00.00.00	서울대학교	자필서명
참여연구원	이○○	00.00.00	서울대학교	자필서명
참여연구원	홍○○	00.00.00	서울대학교	자필서명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 작 성 방 법 〉

1. 표지

- ①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②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③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 ⑥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 ⑦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 ⑧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II. 요약문

-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III.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총괄)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
 -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7.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고, 세부/단위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연구비 소요명세서
 - 가. 연구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다. 직접비
 -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 (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Rightarrow$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 $\times$ 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times$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Rightarrow$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 $\times$ 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times$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양식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Rightarrow$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 $\times$ 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times$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양식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10. 참여기업 현황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 :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2.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가. 추진 배경 : 국내 단독연구의 한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재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나. 성공가능성 :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다.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13.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 :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의견 및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기술
14.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업
15.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